

2025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 자주하는 질문

#리서치형 #프로젝트형 #공간조성형

1 공모사업 안내

가 공모개요

구분	공모사업명	지원대상	지원규모
1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: 리서치형	경기도 거주(소재) 지역활동가, 기획자(단체), 예술인, 문화예술단체, 프로젝트그룹 등	최대 200만원 (10건 내외)
2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: 프로젝트형		최대 2,000만원 (8건 내외)
3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: 공간조성형		최대 3,500만원 (2건 내외)

※ 개인/단체에서 유형별 복수 신청 불가(①리서치형, ②프로젝트형, ③공간조성형)

※ “2025년 지붕없는 박물관(경기 에코뮤지엄)” 선정단체는 “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” 복수 신청 불가

⇒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은 [공고문] 2025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’를 참고해주세요.

가 | 지원 신청 제외 사항

1)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·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학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-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, 단체(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 기준을 따름)
-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
-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, 단체
-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경기문화재단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,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, 단체

2)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
(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역문화진흥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지역문화재단 등)
-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의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
- 시설의 건립과 매입, 재건축 사업
-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
-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유형별(①리서치형, ②프로젝트형, ③공간조성형) 복수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“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”과 “2025년 지붕없는 박물관(경기 에코뮤지엄) 공모 지원사업”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.
- 타 기관 및 재단에서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선정 과정 및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(환수)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신청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접수하며 우편,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(100MB이하)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접수 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제출 바랍니다. 접수 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서류심의 결과 및 최종 선정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단체(개인)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-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지정서식 외 다른 서식의 파일로 제출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및 동의서 작성 시 (인/서명)란 서명하여야합니다.
(도장 및 서명 스캔한 서명, 마우스로 작성한 서명, 정확한 서명만 가능)
- 예산편성, 집행 및 정산은 각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야합니다.
- 지원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정산 간소화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 신고를 완료하여야합니다.
(2025.11.30.까지)
-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,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사업취소, 지원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 결과물은 온라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○ 지원금 운영 및 관리

- 지원금 전용 통장을 운영하여 관리(1사업 1통장)하며 지원금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 발급 기존에 보유한 통장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'0원'인 통장이어야함
- 지원금의 집행 증빙서류 제출 필수(증빙이 불가능할 경우, 해당 금액은 환수 요청)
-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
- 원천세 등 세금 신고는 사업 기간까지 마감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
- 지원금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

○ 지원금 예산 편성 지침

목	세목	내 용
일반 수용비	용역비	■ 기획사, 대행사 등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한 용역비 -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할 때 - 디자인, 영상물 제작, 홍보 및 광고 대행, 구매(제작용역) 등 - 업태, 세부 거래 내역 등 추가 자료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	사례비	■ 기획비, 연구비, 강사료, 원고료, 인터뷰 수당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 (일반 개인 대상) - 원천세(사업3.3%/기타8.8%)를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 -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, 예술인부담분의 보험료(0.8%)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 - 인건비 지급 시에는 원천세와 (해당 시)예술인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 - 지급 후 원천징수 및 (해당 시)예술인고용보험료 신고 납부 필수 - 예술인 고용보험 자체 부담 시(지원금 활용하지 않을 경우) 증빙 불필요
	홍보 및 마케팅	■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각종 온·오프라인 홍보물 제작, 디자인, 광고비 등 - 세부 제작 내역과 홍보물 제작 결과물 증빙 - 광고의 경우 광고 추진내역, 결과물 증빙 ※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의 경우 세금계산서, 카드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는 정식 광고에 한하여 집행 가능
	제작비	■ 영상, 음악, 무대, 소품 등 각종 제작비 - 자산으로 취득 목적의 제작비는 편성 불가
	재료비	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재료 일체 - 재료비(소모품) 구입 시 사진 증빙자료 첨부 -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하며, 임차 또는 대여 권장
	발간비	■ 도록 및 자료집 제작 등 인쇄물 책자, 전자책 발간비
	기타 운영비	■ 본 지원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- 프로그램 진행 다과비 및 회의 식음료비 등 - 소규모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 발송, 쿠팡서비스, 행사보험료, 이체 수수료 등 - 예술인 고용보험료(해당 시에만 예산 편성) ※ 예술인고용보험의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조 http://kawf.kr/

		<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기준> - 재단 지원금만 회계검사 대상임(자부담금 제외) - 지원금 3백만원 이하의 경우 편성 불필요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규모</th><th>수수료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백만원 ~ 1천 5백만원 미만</td><td>226,000</td><td rowspan="3">부가세 포함</td></tr> <tr> <td>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</td><td>302,000</td></tr> <tr> <td>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</td><td>360,0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	사업규모	수수료	비고	7백만원 ~ 1천 5백만원 미만	226,000	부가세 포함	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	302,000	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	360,000
사업규모	수수료	비고										
7백만원 ~ 1천 5백만원 미만	226,000	부가세 포함										
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	302,000											
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	360,000											
임차료	대관료	■ 전시관, 공연장, 연습실 등 공간 대관료 - 단체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임차비 책정 불가										
	임차료	■ 장비, 소품, 기자재, 차량 임차 등 임차료 -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 및 회차에 맞는 기간 및 재료·기자재 임차 - 장비, 소품, 의상 대여비 등										

○ 지원금 집행 및 정산

- 지원금은 교부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, 교부 전 집행 금액은 자부담 처리(보전 불가)
- 지원금은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로만 집행 가능하며 모든 집행 건은 증빙서류 제출

<지원금 집행 제출 증빙서류>

집행수단	구분	번호	필요서류	발급방법
정산증빙자료 목록				
체크카드	필수	1	체크카드 영수증	거래처, NH농협카드
	해당 시	2	(영수증에 세부내역 없을 시) 견적서, 거래명세서	거래처
		3	(회의, 행사의 경우) 회의 및 행사일지	재단 지정서식
계좌이체	필수	1	이체확인증	은행
		2	전자(세금)계산서	거래처
		3	견적서(거래명세서)	거래처
	해당 시	4	현금영수증	거래처
		5	(회의, 행사의 경우) 회의 및 행사일지	재단 지정서식
계좌이체 (사례비)	필수	1	이체확인증	은행
		2	표준계약서	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식
		3	사례비 지급 내역서	재단 지정서식
		4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홈택스, 세무서
		5	국세 납부 영수증	홈택스, 은행, 세무서
		6	지방세 납부 영수증	위택스, 은행, 세무서
	해당 시	7	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지급명세서)	홈택스, 세무서
		8	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	홈택스, 세무서
		9	예술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	근로복지공단

○ 지원금 집행 불가 내역

-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이 지출되었을 시, 해당 금액 환수 조치

※ '공간조성형'의 경우 공간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가능

인정불가 경비 목록	세부 내역
자산취득성 물품	■ 가구(책상, 의자, 선반 등) ■ 전자기기(마이크, 카메라, 보조배터리, PC, 프린터 등) ■ 악기 ■ 각종 집기류(거울, 화분, 서랍, 카메라 삼각대 등) 등 ※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※ 자산취득성 물품에 해당되는지 미리 재단과 협의 필수(자의적 해석 불가) ※ 자산취득성 물품의 기준 : 소모품(조달청 고시 내구연수 기준 내구연한 1년 미만, 취득단가 20만원 미만)이 아닌 물품 : 관련 근거 : 「물품관리법」 제19조, 조달청 고시 「물품분류지침」 제2조
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·기관의 운영 경비	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■ 사무실 임대료, 시설비, 수선비 (공간조성형의 경우 사용 가능) ■ 본 사업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시혜성 물품	■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■ 행사기념품 구입비, 상금, 사례금
과도한 식·음료비 (다과비&회의식비)	■ 매회 식사류 지출은 지양 ■ 참여자 수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■ 사업참여인력 외 다른 인력의 식비까지 지출한 경우 ■ 식비 책정한도 이상을 지출한 경우
주류 및 유흥성 지출	■ 주류 구입 불가 ■ 회의식비가 아닌 회식성(심야시간) 지출 불가 ※ 회의식비 지출 시 회의일지 작성 및 제출 필수(재단 서식)
경기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	■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게 지급 불가 ■ 동일 인력에게 여러 항목의 인건비 중복·교차 지급 불가
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	■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(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)
기타 사항	■ 지원금(보조금)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■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■ 임차 기자재 중 본 사업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협의 필수 ■ 교부신청에 제시되지 않은 비소모품 구입 불가

구분	질문	응답																				
24년도 사업 추진 현황	24년도 경쟁률은 어떤가요?	<2024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률 및 경쟁률> <table><tr><th>지원사업 유형</th><th>접수건수</th><th>선정건수</th><th>선정률</th><th>경쟁률</th></tr><tr><td>리서치형</td><td>58건</td><td>11건</td><td>19.0%</td><td>5.3:1</td></tr><tr><td>프로젝트형</td><td>146건</td><td>8건</td><td>5.5%</td><td>18.3:1</td></tr><tr><td>공간조성형</td><td>15건</td><td>1건</td><td>6%</td><td>15:1</td></tr></table>	지원사업 유형	접수건수	선정건수	선정률	경쟁률	리서치형	58건	11건	19.0%	5.3:1	프로젝트형	146건	8건	5.5%	18.3:1	공간조성형	15건	1건	6%	15:1
	지원사업 유형	접수건수	선정건수	선정률	경쟁률																	
리서치형	58건	11건	19.0%	5.3:1																		
프로젝트형	146건	8건	5.5%	18.3:1																		
공간조성형	15건	1건	6%	15:1																		
	24년도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나요?	☐ 경기문화재단 누리집-[지역]-[지역문화]에서 사업결과물 확인가능합니다. * 바로가기 링크: https://www.ggcf.kr/pages/RegionalCultures																				
지원사업 내용	연속지원 가능한가요?	☐ 동일한 사업으로 신청 시 매해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속 지원 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심의에 반영됩니다.																				
	유형을 교차하여 연속 지원 가능한가요?	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시, 연차에 따라 유형을 변경해서 지원 가능합니다. 단, 연차 단계에 따라 '리서치형'은 3차년도에 지원 불가합니다. 예) (1차년) 리서치형 - (2차년) 프로젝트형 - (3차년) 리서치형 (x)																				
	선정된 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?	☐ 당초 사업의 목적과 규모,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(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) 다만 경우에 따라 선정 취소나 지원액 감액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
	공간조성형의 공간 조건이 있는가요?	☐ 도내 유휴(폐) 공간, 운영 중인 공간 모두 가능합니다. 단, 지원 후 최소 3년간은 공공적 지역 허브 기능을 수행하여야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
지원신청	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한가요?	☐ 전자우편, 우편접수, 방문우편 모두 접수 불가합니다. 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(지정양식)을 첨부파일로 올려서 지원신청 제출만 가능합니다. - 시스템 관련은 공고문 내 붙임 파일 확인 바람																				
	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?	☐ 지원신청서(지정양식) 제출하여야합니다. 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https://www.ggcf.kr)에서 다운받아 작성 "2025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"로 검색 -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확인증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) 반드시 첨부[붙임3~5] (※ 미첨부시 행정 심의 탈락)																				
	지원금 통장과 체크카드는 새로 만들어야 하나?	☐ 지원사업별로 전용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.(1개 사업당 1개 전용 통장) - 타 지원금 혼용 절대 불가 ☐ 금융기관 상관없이 기존 사용해 온 잔액이 없는 통장도 사용 가능합니다. ☐ 지원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야합니다.(신용카드 불가)																				
	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나요?	☐ 현재 다른 지원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신청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합니다.(중복지원불가)																				
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	예산 편성시 '자부담'도 있어야 하는지	☐ 자부담 편성은 필수가 아닙니다.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자부담분 편성 가능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질문	응답						
	정산해야하는지?	☐ 자부담을 편성했을 시 별도 정산은 필요 없으며 회계검사 시에는 재단 지원금만 검사하면 됩니다.(재단지원금 기준으로 회계검사수수료 편성)						
	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'수익금'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?	☐ 선정단체의 자산으로 취득 불가합니다. ☐ 프로그램 참가비, 행사 물품 판매비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사업비에 편성해서 전액 지출해야 하며, 수익금은 정산 대상이며 회계검사 필수입니다.(증빙 제출 필수)						
	지원금 사용 금지 항목이 있나?	☐ 예산편성 지침(p.4) 확인해 주십시오. - 주류 구입 및 주류 판매점(술집, 치킨집 등) - 자산성 물품 구입(소모성이 아닌 물품) 등 단,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산성 물품이 필요한 경우 임차 가능 ※ 사업 정산 과정에서 금지 항목 구입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납 요청함						
	지원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	☐ 사업완료 후 정산 결과보고서, 지원금 전액 이체확인증, 통장사본 제출 - 지원금 전액을 타 계좌로 이체한 이체확인증과 이체내역이 찍힌 통장사본 제출 - 지원금을 지출한 세부 영수증 및 내역은 별도 요청하지 않음 - 단, 지원금 정산을 간소화한 만큼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예정 - 제출서류 미제출, 증빙자료 불충분, 서류 미비 등은 지원금 집행 세부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						
국가문화 예술지원 시스템 NCAS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가 무엇인지?	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(https://www.ncas.or.kr/)는 2022년 처음 도입되었는데,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·관리·운영하고, 17개 광역자치단체(문화재단)의 보조금 주관기관 등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. -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, 지원 심의 경과 확인, 지원 결정시 교부 신청, 결과보고서 제출 등 가능						
	시스템 사용 방법은?	☐ 공고문 내 [붙임2] 파일 확인 바랍니다.						
기타 문의 사항	기타 문의 사항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문의처</th></tr><tr><td>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</td><td>1577-8751 평일9~18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</td></tr><tr><td>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문의</td><td>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</td></tr></table>	구분	문의처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	1577-8751 평일9~18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
		구분	문의처					
	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	1577-8751 평일9~18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				
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						